

여 성 가 족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아이돌봄지원사업 임시공휴일 지원금액 산출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김해시, 사천시, 창원시

내 용

여성가족부에서는 2016. 5. 6.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평일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휴일활동에 따른 추가요금은 별도로 지원하도록 협조요청(○○○○과-0000(2016. 0. 00.)호) 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각 시·군에 동일한 내용으로 협조요청(○○○○○○관-00000(2016. 0. 00.)호)을 하였으며, 각 서비스 제공기관은 5월분 활동수당을 입금하는 시기에 공휴일 활동에 따른 추가수당을 산출하여 각 돌보미에게 지급하였다.

각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 101쪽에서 112쪽에 명시된 201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산정표에 따라 추가요금을 산출하여야 하나, 산출에 오류가 있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 사천시장, 창원시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원금액 1,249,660원을 환수하고 미지급된 금액 39,950원을 지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